

## 1. 신고(출생·혼인·이혼·전입·전거 등), 증명(주민표 등)

호적(출생 등)·주민표 관련(전입 등) 신고, 주민표 사본 등의 신청에는 체류 카드나 운전 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호적 신고

종류	신고 기간	신고인	신고 장소	필요한 것
출생 신고	태어난 날로부터 14일 이내(14일째가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	부 또는 모	소재지(신고인) 출생지	출생 신고(오른쪽 증명서에 의사가 기재) 모자건강수첩 신고인의 인감※
사망 신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7일째가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	동거 친족·별거 친족·동거인 등	소재지(신고인) 사망지	사망 신고(오른쪽 증명서에 의사가 기재) 신고인의 인감※
혼인 신고	신고한 날로부터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	남편과 아내의 쌍방	소재지(신고인)	혼인 신고(20세 이상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 ※ 남편과 아내의 인감※ 미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 ★외국 국적자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일본어 번역도 필요) 등이 필요하며 국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호적 주민과에 확인할 것
이혼 신고	신고한 날로부터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조정·재판 이혼인 경우에는 성립,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남편과 아내의 쌍방 조정·재판 이혼 등은 신청인	소재지(신고인)	이혼 신고(20세 이상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 ※ 남편과 아내의 인감※(조정·재판 이혼은 신청인의 것) ★조정 등의 경우는 조정 조서·심판서·판결서 등이 필요. 또한 국적에 따라 신고 요건,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호적주민과에 확인
기타 신고	인지 신고·양자 결연 신고·양자 이연 신고·사산 신고 등의 신고 방법에 관한 문이는 호적주민과로.			

※한자권에 국적이 있는 신고인에 한해 필요. 그러나 날인 선택. 인주를 사용하지 않는 스탬프 방식의 도장은 사용 불가.

## ■주민 등록 신고

종류	신고 기간	신고인	신고 장소	필요한 것
전입 신고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야치요시에 서의 동일 세대원 (동일 주민표)·대 리인	호적주민과 ·지소	전출증명서(전 주소의 시구청촌에서 발행) <b>★해외 전입의 경우는 여권</b>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수첩(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거 신고	전거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신구 세대주 ·새 주소의 동일 세대원(동일 주민 표)·대리인	호적주민과 ·지소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발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출 신고	전출하는 날까지	본인·야치요시에 서의 동일 세대원 (동일 주민표)·대 리인	호적주민과 ·지소	국민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 ·합병 등· 세대 합병	신고일로부터 법률 상의 효력	본인·세대주·대 리인	호적주민과 ·지소	국민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 는 경우, 세대 합병은 양쪽 모두의 보험증)

※이동 신고의 경우,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

## ■위임장의 예

위 임 장  
대리인 주소  
성명

저는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  
○○의 신청(취득)에 대해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성명                    Ⓜ

(보낼 곳) 야치요시장

⇒ 본인(위임인)이 자필로 기입하  
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 ■증명서의 교부

호적 증명이나 주민표 사본 등

전화로 예약을 통한 폐청 시 수령※1만, 편의점에서 취득※2만

(인감 등록 증명서는 우편 발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종류	창구	수수료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기타
호적 전부(개인) 사항 증명(호적 등·초본)※2	호적주민과·지소·연락소	1통 450엔	본인·배우자·직계의 친족- 【부모·자식】(대리인 청구는 위임장이 필요)	본적이 야치요시 이외인 경우에는 본적지에 청구
제적 전부(개인) 사항 증명(제적 등·초본)		1통 750엔		
개제 원호적 등·초본				
호적의 부표 사본※1、※2		1통 300엔		
수리 증명서		1통 350엔	신고인(대리인 청구는 위임장이 필요)	호적에 관한 신고 수리의 증명. 야치요시 이외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지에 청구
주민표 사본※1、※2		1통 300엔	본인·동일 세대 (대리인 청구는 위임장이 필요)	동거하고 있더라도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1				
인감 등록 증명서※2				

※인감 등록 증명서 이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체류 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함

※편의점에서 취득할 때는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된 마이 넘버 카드(사진이 부착된 것)가 필요합니다. 또한 호적 증명과 호적 부표 사본은 본인 및 동일 호적에 있는 분만 편의점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호적 증명과 호적 부표 사본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입니다. (12월 29일부터 13일 및 보수 점검일(비정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인감 등록

###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야치요시의 주민 기본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15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 주십시오.

### ●등록할 수 없는 인감

①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인감

②주소나 직업·자격 등 성명 이외의 사항이 나타나 있는 것

- ③고무인 등의 인감으로, 변형되기 쉬운 재질로 된 것
- ④인영(도장을 찍은 자국)의 크기가 한 변의 길이 8mm 정사각형 이하인 것  
또는 한 변의 길이 25mm 정사각형을 초과하는 것
- ⑤테두리가 없는 것, 인영이 선명하지 않거나 문자의 판독이 어려운 것
- ⑥음각 조각한 것(문자 부분이 하얗게 표시되는 것)
- ⑦그 밖에 등록하려고 하는 인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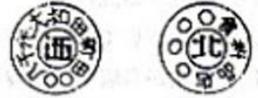
25mm를 초과하는 것



8mm 이하인 것



주소나 옥호가 들어 있는 것



가장자리가 깨지거나 닳아서 인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신청 장소  
호적주민과 · 지소

●등록 수수료  
300엔

## ■인감 등록의 흐름

신청인	지참물	교부
본인	1. 등록할 인감	당일
	2.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이 붙은 증명서(체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3. 상기 2의 증명서가 없을 때는 야치요시에 인감을 등록한 분이 보증인이 되어 인감 등록 신청서의 보증서란에 등록한 도장을 찍고, 보증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등을 자필로 기입하여 등록 신청자가 본인임을 보증한 신청서	
	4. 상기 2, 3을 지참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을 받은 후에 조회서를 우편 발송합니다. 동봉한 답변서와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조회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참	추후
대리인	1. 본인의 자필 위임장(등록할 도장을 찍은 것)	추후
	2.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인감	
	4. 신청을 받은 후에 조회서를 우편 발송합니다. 동봉된 답변서, 본인 자필 위임장,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조회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참	

※한자 인감을 등록할 수 있는 분은 한자 통칭명이 등록된 분,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한자 병기명이 있는 분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적주민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 3. 휴일 개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일요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호적주민과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